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도희재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대내·외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농협합병 정의 추가(안 제2조)

나. 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 신설(안 제5조)

다. 준용 법조문 변경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3. 16. ~ 3. 22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유통혁신,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지역농협합병 정의 추가, 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 신설 준용 법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